

- 5) 일반게임제공업 허가, 청소년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·신고신청 : [안 별표1 6. (24)]
- 6)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, 청소년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변경등록신청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·변경신고신청 : [안 별표1 6. (25)]

라.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: 5종

- 1) 영화업자 신고(신설) : 1건 20,000원[안 별표1 6. (26)]
- 2) 영화업자 변경신고(신설) : 1건 10,000원[안 별표1 6. (27)]
- 3) 영화업신고증 재교부(신설) : 1건 5,000원[안 별표1 6. (28)]
- 4)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(신설) : 1건 20,000원[안 별표1 6. (29)]
- 5)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(신설) : 1건 10,000원
[안 별표1 6. (30)]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및 근거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등록 및 결정)
- 3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등록 및 결정)
- 4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자의 결정·등록 등)
- 5)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등록 및 결정)
- 6)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등록 및 결정)
- 7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 등록)
- 8)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 제12조(신고)
- 9)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9조(신고)
- 10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게임제작업 등의 등록)
- 11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)
- 1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영화업자의 신고 등)
- 13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7조(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) 및 같은 법 제61조(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)

나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2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4) 의견제출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
(안 제7조1항1호)

○ 「별표1」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

- 요율착오 기재로 인한 요율 정정 : 1종
-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명칭 변경 : 6종
- 관련 법령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: 5종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 관련법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처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로 판단되며,

-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신설과 명칭변경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